## '지방재정' 관련 궁금증 해결

글 명삼수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실 재정정책과)



#### 명시이월 예산의 전용

건기길을 조성하면서 홍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중 행사운영비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승인되어 예산을 편성했으나, 당해연도에는 길조 성중이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다. 예산의 과목은 행사운영비(201-03)로 편성했으나 행사의 성격상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민간 행사보조금(307-04)으로 변경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목 그룹이 달라 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확정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과목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월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만 허용되는 것이며, 당해 경비의 성질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월된 사유와도 맞지 않게 되므로 경비성질을 변경하여 집행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명시이월된 사업 중 행사운영비(201-03)에서 민간행사보조금(307-04)로 목 그룹을 달리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명시이월한 예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으로서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예산현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서 조정할 수 없다.



#### 광역시 건설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경비 부담

우리 구 관내 ㅇㅇ도시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 건립주체는 ㅇㅇ광역시로 하고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간에 협약에 의해자치구에서 광역시에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와 자치구에서 광역시에 예산 부담이 가능하다면 예산과목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도가 시행하 는 토목이나 그 밖의 건설사업 중 그 구역의 시 · 군 및 자치구에 이 익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 · 도는 그 건설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한도에서 그시 ·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건설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 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항에 따라 시·군및 자 치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시 · 군 및 자치구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안전행정부 훈령) 제6조 제2항의 별표 9(세출예산 성질별 분 류)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3)에 따르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되 어 있다. ①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 등에 의한 시군구에서 시도 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②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상호 간 부담경비, 문의 내용은 ㅇㅇ광역시에서 추 진하는 복합문화센터를 ㅇㅇㅇ구에 건립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ㅇ ㅇㅇ구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거나 또는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합문화센터 건설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경비의 세출예산과목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3)이 타당하다.



#### 민간인의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편성과목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농수산업 종사자 등)들에 대하여 해외 선진 지 견학을 보내려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보면, 301-07(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관련 전문가가

당해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비전문가인 단순 농수산 업 종사자들의 선진지 견학 목적으로 계상할 수 없는 과목이다. 타 과 목인 301-10(행사실비보상금) 항목에 계상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nswer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안전행정부 훈령) [별표 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301-07)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 시의 여비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는 동 예산과목에 편성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자치단체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인(○○업 종사자 등)의 해외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예산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301-10)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 서로 다른 편성목으로도 이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예를 들어 동일부서 내의 A정책사업 자산취득비(405목)를 B 정책사업 자치단체등이전(308목)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하다.



'지방재정법' 제4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안전행정부 후령) 제8조 제1항 [별표 11] 사업예산의 우영기준의 '예산의

이용'에 따르면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 이때 사업부서는 정책사업 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정책사업 간 이용을 하면서 예산의 편성목을 달리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 군부대 체육시설 설치 위한 경비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군부대 연병장을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하여 자유롭게 연병장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한다 (인근에 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군부대 연병장에 체육시설 설치(인조잔디구장 등)를 위한 지방비(도비 포함)를 편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 이용되는 군부대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군부대 연병장 내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법' 제35조에 따라 군부대 내의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보수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보수가 아니라 새롭게 시설하거나 설치하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될 것으로 보인다. ⑤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적용지침

글 \_ 오 정 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실 지방세운영과)

지난 6월 3일 안전행정부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관련 적용지침'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889호)을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5월 10일 있었던 당초분 31건과 추가분(수정분 포함) 22건을 하나로 정리한 총괄지침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감면대상: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간 소득액이 7,000만 원 이하 로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시행기간: 2013년 4월 1일~12월 31일(9개월간)
- 무주택 확인 통합지방세정보통신망 구축 완료: 6월 1일
- '세대원에 동거인은 제외' 등 법령개정 추진(6월중) 및 운영기준 개정(안행부고시 제2013-9호, 2013, 6, 3)
- (입법보완 전제) 세대원에서 동거인 제외하고 외국인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에 배우자와 그 자녀(외손자녀) 포함 등
- (추가 쟁점정리) 처분에 철거로 멸실된 주택 포함, 취득일에 세대분가한 세대 주도 세대주로 인정 등



#### 감면신청. 환급 등 세부절차

감면신청 대상자는 개정법률 소급적용일(4월 1일)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일(5월 10일) 이전까지 6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1주택자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는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포함된다.

감면신청 기간은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 이내(7월 9일까지)이고, 소급적용을 고려해 취득일이 아닌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간 적용 된다.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로 확인 가능하다. 유주택자로 확인 되면 확인내용 등을 명시한 감면불가 통지서를 발송한다. 취득세 기납부자로서서 감면대상으로 확인되면 즉시 환급조치된다. 환급이자는 개정법률 시행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된다. 생초감면 개정법률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점과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미신고자및 신고 후 미납부자도 감면신청기간을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감면신청 처리기간은 다른 자치단체의 주택소유 및 주택가격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의 기간을 고려한다. 감면운영기준(안행부 고시 보칙)으로 생초감면신청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감면처리기간을 10일 간 연장(5→15일)한다.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구축된 이후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감면처리한다.

감면신청서에 첨부하는 관계 증명서류는 △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 △ 매매계약서 등 기타 생초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다. G4C 등 정보이용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의 범위 등

동거인(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 란에 기재된 자)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상에 세대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생애최초주택 관련 세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세대원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범위를 당초 순수 직계비속에서 배우자와 그의 자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배우자의 범위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배우자에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개선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이 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내국인과 혼인하였음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배우자로 간주한다. 내국인 세대 주의 무주택 여부 등 판단 시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하여 판단하되, 외국인 배우자도 감면요건 충족 시는 감면대상으로 처리한다.

배우자 없이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세대에서 배우자가 없는 사유를 '사망 또는 이혼'에서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개선했다. 따라서 직계비속은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미혼모도 사실상 배우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세대주로 인정한다.

35세 미만 결혼예정자의 경우,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독세대주 등으로 있다가 혼인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35세 미만의 결혼예정자가 단독세대주, 동거인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도 혼인을 원인으로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되는 경우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35세 미만 세대주가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연령에 상관없이 부양하는 세대원이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있으면 감면대상이다.

또한 1년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세대주의 연령 요건이 당초 35세 미만에서 20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미혼이라도 20세 이상이면 연령에 상관없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로서 1년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신고나 직권에 의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말소된 자는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말소사유 해소로 재등록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기산일은 세대분리를 신고하는 신고일이다. 그러므로 신고일 전일까지는 세대원으로 보아야 한다. 취득일인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에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되는 경우에도 세대주에 해당된다.



#### 무주택 확인 주체. 방법 등

무주택 여부 확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조회를 통해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무주택 확인대상 범위는는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상 전 세대원으로 한다. 이때 배우자(혼인의 사유로 배우자로 예정된 사람)·직계존속·직계비속이 포함된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타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나, 납세자는 주택 소유사실을 부인한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소재지 자치단체장에게 주택의 소유사실, 주택가격 확인을 요청한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소재지 자치단체장 이게 주택의 소유사실, 주택가격 확인을 요청한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소재지 자치단체장이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범위가 당초 20제곱 미터 이하 등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20제곱미터 이하 등 제3항 제3 ~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종전에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무주택으로 보는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주거용 건축물의 가액이 100만 원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부상 등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이 멸실되어 없는 경우도 시가표준액 100만 원이하로 가주한다.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60일 이내 결혼예정자의 경우는 결혼 예정자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정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7,000 만 원 이하 소득요건도 본인과 배우자에 한정하여 합산 판단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상속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의 처분기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이 없다. 딸라서 감면신청 하는 주택 취득일 이전에 상속 공유지분을 처분하였다면 처분요건을 충족한다.



####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을 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상 업무시설용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가액 6억 원 이하'라는 말은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로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동명의, 즉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취득하는 지분이 생애최초 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해당지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는다.

본인 명의 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도 감면대상이 된다. 본인 명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가족 이외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소유한 지분 이외 타인 명의의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1주 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주택을 부부가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더라 도 세대주 및 배우자로 구성된 부부가 생애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 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반면, 1주택의 지분을 분할하여 세대주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 생애최초로 볼 수 없다.

6억 원 초과주택의 6억 원 이하 금액만큼 감면은 불가하다.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대물감면'이므로 그 주택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주택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한다. 마찬가지로 6억 원 초과주택을 6억 원 이하지분만큼 취득 때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주택을 생초 감면대상들이 공동지분으로 각각 5억 원에 매수한 경우라도 당해 주택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각각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도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1세대별로 독립하여 지분등기하지 않은 경우 1채의 단독주택으로 보아감면혜택를 부여한다. 현행 지방세법 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일

지라도 1세대별로 독립되어 구분 사용할 있도록 구획되어 생활·거래되는 경우에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다가구주택을 고급주택에서 배제하기 위한 취지이다.

Case 05

#### 소득금액 등 판단기준

연간소득 7,000만 원의 합산대상은 세대주 및 배우자로 한정한다. 다만, 결혼을 사유로 60일 이내 배우자로 예정된 자는 포함된다. 가 족관계증명 등을 통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결혼 여부를 확인하고 추정사유 발생 시 추정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으로 한다(개정고시 제4조 제4항).

다만,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 소 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연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귀속연도분 소득금액 확인은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 원으로 확인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 취득자는 직전연도와 전전연도 중 유리 한 소득금액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고시 제5조 및 부칙 제2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취득일 당해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발생 귀속연도의 구분에 따라 세무서 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주택 취득 당 시 당해연도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전연도분이나 전전연도분 소 득금액증명원 등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내국인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귀속연도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소득금액이 귀속연도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소득금액으로 본다. ⑤

### '지방재정'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 니다!

격월간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전문 교양지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제안·논문

지방재정 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으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활동이나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에 제 이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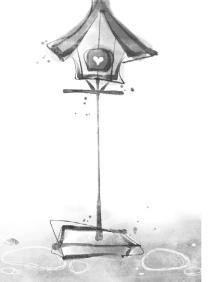
보내실 곳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16층 (우)121-719

Tel.02)3274-2027 / Fax.02)3274-2009

**E-mail.** myposse@lofa.or.kr



편집 후기

05\*06

0

혼 번

Oŧ 7

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더운 날씨만큼 뜨겁게, 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국회도, 지방자치단체들도 발 벗고 나섰다는 소식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대하는 마음으로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격월간 '지방재정'을 바라보는 눈길도 많아지고 있다. 더 정확하고 더 깊이있는 정보가 담긴 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지만, 그래도 이런 관심들이 고맙고 행복하다.



# 격월간 '지방재정' 전자책(eBook)으로도 만난다!

#### ebook.lofa.or.kr

격월간 「지방재정」은 전자책(ebook)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자책(ebook)서비스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좌측하단 'ebook → 지방재정자료'를 클릭하거나,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ebook.lofa.or.kr)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도 언제 어디서나 책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외에도 지방재정관련 간행물, 업무자료, 보고서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호의 목차에서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면기사 원문을 자세히 볼 수 있으며, 통합검색과 페이지 확대·축소, 필요부문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